
대한민국의 위대한 탄생

최대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한민국의 위대한 탄생

- 건국 73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축하하며

최대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1

보기 드문 코로나역병의 전 세계적 창궐과 좌파정부가 가져온 유례가 없는 퇴행적 경제 정책 및 사상적 정치적 혼란과 삶의 고단함·어려움 속에서도 이제는 UN기구(유엔무역개발 회의: UNCTA)까지도 선진국으로 선포한, 전 세계적으로도 우뚝 선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일을 당당히 기억하고 소리 높여 기념하는 건국 73주년 기념 학술대회 행사장에 이렇게 뿔뿔하게 나와 대한민국의 헌법학자로서 축사를 하게 됨을 자랑스럽고 진심으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금년 8·15건국기념일을 지내면서 문재인정부 인사들은 물론 언론에서도 광복을 기념한다고 했지 건국기념일임을 언급하는 일은 전혀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건국기념일이 없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지요. 그리고 이래도 되는 것인지요.

2

대한민국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¹⁾ 오늘의 이 기념학술 행사가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기념비적인 대한민국의 건국을 언급하지 아니함은 물론 여러 가지로 폄훼하는 시각과 괴담의 참담함을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누리고 있는 이 자유로움, 풍요로움, 그리고 세계 어딜 나가도 당당히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준 그 기본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제 돌아서서 그 성취의 과일은 향유하면서도 그 기본을 폄하하고 부인해서 얻는 이득은 무엇이며, 또 무엇을, 또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든 그 기본은 남북분단, 좌우대립 등 우리나라 해방 정국의 극도의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38도선 이남에서는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제헌국회의원을 뽑는 자유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구성된 제헌국회를 통하여 우

1) 이주영, **대한민국의 건국과정**, (서울: 건국기념보급회 출판부, 2013); 강규형·김용삼·남정욱·정경희, **대한민국 건국 이야기 1948**, (서울: 가파랑, 2019) 참조.

리(대한국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그 정체성(正體性: identity)²⁾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채택을 결단하였으며, 그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그 해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선포함으로써 완성된 대한민국의 건립을 세계만방에 천명하게 되었다는 위대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국가는 국민, 영토 및 주권 등 3요소로 구성된다는 사실은 초등학교 상급반 학생만 되어도 누구나 다 아는 지식이며 상식이고, 그리고 정부(수립)란 주권(행사)의 핵심을 차지합니다.³⁾ 그 8·15날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선포함으로써 국민, 영토 및 주권을 지닌 대한민국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건국을 폄훼하는 주장 가운데 하나는, 1948년 8월 15일 날 중앙청 건물 앞에 걸린 플래카드에 쓰여 있듯이, 그날 선포된 것은 단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였지, 대한민국 건국 선포가 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독정부 수립에 지나지 않는다는 좌파들의 대표적인 대한민국 폄훼주장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된 좌파들의 또 다른 대한민국 폄훼 주장의 하나는 대한민국 건국일은 1919년 3월 1일의 자주독립운동을 구현 계승한 4월 11일의 중국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주독립,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를 선포한 임시정부 헌법의 정신이랄까 법통을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이를 계승한다고 명시·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대한국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피눈물 나는 임정의 투쟁사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외국 영토에서 선포한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일 수가 없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작 운동권 주사파 등 친북 좌파들이 사모하는 북한 정부는 자기들의 정통성을 대한민국의 경우처럼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전통과 정신에서 찾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⁴⁾ 더구나 월북한 김원봉이 한국 국군의 뿌리라는 좌파정부의 주장은 웃길 뿐입니다. 그는 김일성체제의 핵심각료였으며 6·25전쟁 때 공훈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⁵⁾

좌파들의 대한민국 건국 폄훼 주장은 미묘하게도 대표적 독립운동가 가운데에서 유독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 김구 선생을 앞세우고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그 방어와 번영의 기초를 닦은 이승만 박사에 대하여는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인양 친일파와 손잡고 단독정부를 수립한 독재자 등의 폄하주장으로 연계합니다. 그러한 주장은 나아가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폄하하는 좌파 대통령의 연설로도 표현되곤 합니다. 그리고 6·25전쟁의 백척간두에서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한 백선엽 장군의 친일파 논쟁 및 현충원 안장 반대에 이릅니다. 또 산업화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요 독재자

2) 최대권, “대한민국의 정체성(正體性)은 무엇인가,” *국가전략연구 Global Affairs*, 세종대학교 세종연구원, 2011년 가을호(국가정체성 위기 특집호), 38-58면 참조.

3) 최대권, “근현대사는 역가학자 전유물 아니다,” *문화일보* 2015.11.11.일자 포럼 참조.

4) 북한헌법(2016) 서문 참조.

5) 최대권, “김원봉 추앙은 ‘대한민국 가치’ 배신,” 2019.6.11.일자 *문화일보* 포럼 참조.

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그 부강이 과연 그 같은 원죄 (peccatum originale; original sin) 일까요? 천우신조의 묘수였을까요? 소련군이 진주했던 북에서는 궁극적으로 적화통일을 노린 사실상의 공산정권인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이미 1946년부터 설립⁶⁾, 정부로서 계속 활동해왔으면서도 줄기차게 좌우합작을 명분으로 하여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다면서 여러 모습으로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해왔습니다. 단지 이름만 바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포를 1948년 9월 9일에 했을 뿐입니다. 오늘 여기 세미나에서 다루려는 4·3사태는 북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탄생의 초석인 5·10선거를 좌초시키려는 제주노동당책 김달삼이 이끈 빨치산 무장대가 도내 24개 경찰지서 등을 습격해 경찰·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참살한 무력폭동사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한 만큼 우리가 제기해야 할 질문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라 폄하된 대한민국 건국은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남한에서만이라도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를 장착한 대한민국의 건국은, 무력 적화통일을 꾀한 피와 파괴의 6·25전쟁, 그 후의 온갖 파괴공작 등으로 야기된 간난고초를 극복하고 오늘의 위상, 오늘의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을 꾸릴 수 있게 한 그 기본이 되었다는 점에서, 원래 남한에 거주했던 국민을 위해서는 물론, 그 후 합류한 월남 또는 탈북 국민을 위해서도, 그리고 장차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되었을 시 끌어안게 될 북쪽 동포를 포함한, 온 대한국민의 크나큰 축복이요 영광이라 믿습니다.

첫째로 해체된 옛 소련 연방 사회주의체제를 포함해 북측에 건설된 공산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의 전체주의체제와 남측 자유민주주의체제 사이의 체제 경쟁에서 어느 체제가 승자인가는 남북대결에서나 세계적으로도 이미 판가름 나 있습니다.⁷⁾ 해방 후 및 6·25때의 월남, 그리고 오늘날의 탈북은 체제 승자에게 지지를 보여주는 자발적 국민투표행위입니다. 1987년 봄 아직 사회주의체제가 살아있던 시절의 동구 위성국가에서 온 한 학자와 방문교수가 있던 미국대학(UC Berkeley)의 한 연구실에서 나눈 대화에서, 내가 당신네는 공산체제 치하에 있지만 나라가 분단되지 않아서 좋겠다고 했더니 정색하며 나온 “너희는 남쪽만이라도 자유가 있어서 참 좋겠다.”는 그의 아주 즉각적인 대답은 잊을 수 없는, 참으로 깊은

6) 처음 즉 1946년에는 “임시”를 붙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고 불렀습니다.

7) 2020년6월25일 한국전쟁70주년기념식에서 행한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국내 총생산(GDP)은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400배가 넘는다.”는 좌파 민주당 문대통령의 특별연설 참조. 그리고 Deidre Nansen McCloskey, *Why Liberalism Works: How True Liberal Values Produce a Freer, More Equal, Prosperous World for All*,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9); Matthew Kroenig, *The Return of Great Power Rivalry: Democracy versus Autocracy from the Ancient World to the U.S. and Chin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등 참조.

인상을 내게 남겨 주었습니다. 이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이제는 북녘의 동포들을 우리 품 안에 껴안을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게 된 것이 아닙니까? 2018년 개헌 논의 때 좌파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조항으로부터 자유를 빼고 개헌안을 내놓았었는데,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체제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만든 핵심적 요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요인을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서 아주 썩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처럼 모든 것을 중앙의 결정이나 통제에 의하여 하게 하지 아니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손을 통하여 전체를 아우르게 하는 자유시장적인 체제가 그것입니다.⁸⁾

셋째로 노동당(공산당) 영도주의⁹⁾와 민주적 중앙집권제(democratic centralism)¹⁰⁾를 장착한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체제와 기본적 인권·권력분립·견제와 균형 원리(사법권독립 포함)·다원주의체제를 장착한 자유민주주의는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두 체제 사이에서는 좌파들이 좋아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원천적으로 실현 불가능합니다. 사회주의적 전체주의를 아우르는 법치주의는 영어로 the Rule by Law이고, 자유체제를 담보하는 법치주의는 법 지배의 원칙 the Rule of Law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연방제는 당영도주의·민주적 중앙집권제를 담보하는 the Rule by Law와도 양립할 수 없습니다. 연방제는 동일한 헌법적 틀 안에서의 지역분권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연방제는 헌법 차원의 지역분권이고 단일국가의 지방자치는 법률 차원의 지역분권이기 때문입니다. 옛 소련 연방에서 (미국의 주에 상당하는) 공화국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장치는 공산당중앙입니다.¹¹⁾ 그러니까 당영도주의 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타당한 지역분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권

8) Ralf Dahrendorf, “Market and Plan: Two Types of Rationality,” in Ralf Dahrendorf, *Essays in the Theory of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8), 215-231면(8장) 참조.

9) 북한헌법(2016) 제11조.

10) 북한헌법(2016) 제5조.

11) 최대권,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본질과 현상**, 2019년 겨울 58호, 46-69면, 특히 55-61면 및 65면 이하 참조. 그리고 최대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최대권, “김대법원장이 ‘법의 지배’ 무너뜨린다,” 2021.2.5.일자 **문화일보** 포럼; 최대권, “정부 존재 이유 저버린 文정권 4년, 2021.4.7.일자 **문화일보** 포럼 등; 그리고 최대권, “聯邦制度,” **憲法學: 法社會學的 接近**, (서울: 박영사, 1989), 373-418면; Brian Z. Tamanaha, *On the Rule of Law: History, Politics,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Tom Ginsburg and Tamir Moustafa, eds. *Rule by Law: Politics of Courts in Authoritarian Regi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Tom Bingham, *The Rule of Law*, (Penguin Books, 2010); Franz Neumann, *The Rule of Law: Political Theory and the Legal System in Modern Society*, (Leamington Spa: Heidelberg: Dover, NH: Berg Publishers, 1986) 등 참조.

력분립에는 3권분립과 마찬가지로 연방제도 권력분립장치인데 일당독재(즉 당영도주의) 및 민주적 중앙집권제의 체제에서는 지역분권(즉 중앙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지역분권) 즉 연방제는 개념상 있을 수 없겠지요. 진정한 연방제라면 중앙정부의 조직원리가 문제겠지요. 만약 1당영도주의와 민주적 중앙집권제를 견지하는 북과 자유선거체제를 견지하는 다원주의적인 남이 어느 쪽도 헤게모니를 쥐지 아니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연합정부를 구성한다면 그것은 통일된 중앙정부가 아니고 1991년의 남북합의서에서 합의한 바 있는 국가(또는 체제)연합체제 또는 그와 유사한 체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¹²⁾ 그것은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체제일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 헌법(제4조)이 상정하는 통일은 아니겠지요.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체제 하의 통일을 주문하고 있습니다(제4조). 또 자유민주체제에서 형성된 인격을 지닌 사람은 체질적으로도 전체주의에서는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일이라면 체제의 우월한 경쟁력 때문에 자유민주체제 하의 통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 조항(제1조제2항)은 한국민족주의 조항이기도 한데, 심정적으로는 물론 헌법적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자유와 경제적 부(富)를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한 북녘의 동포에게도 누리게 해야 한다는 명제를 헌법 제4조는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국민이란 영어로 nation 혹은 nationality이고, 흔히 민족주의로 번역되는 nationalism은 실은 국민주의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두 단어 모두 nation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¹³⁾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이 어려운 것은 공산사회주의체제의 중국이 순망치한(唇亡齒寒)의 위치 내지 기능을 지닌다고 간주하는 북한을, 그저 굶어죽지 않을 만큼이지만, 확실히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력 등 경쟁력이 약한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핵 및 그 운반체제의 개발로 겨우 버티며 생존하고 있으나, 그것은 소련이 쥘 핵이 소련사회주의체제의 붕괴(개혁·개방)의 방해요소가 되지 않았던 예를 보면, 중국에서 기독교화·민주화가 일어나 전체주의적 통제체제가 붕괴되면 북의 핵이 반드시 남북통일의 방해요소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6·25전쟁 때 사회주의 중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 때에 남북통일은 이미 이뤄졌을 것입니다.

넷째로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좌파들은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고(건국) 절대절명의 위기(6·25전쟁 등)에서 나라를 지키며 그 발전(산업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애국자들(한국의 the

12) 최대권, “「南北合意書」와 관련된 제반 法問題 - 특히 「特殊關係」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제34권 3·4호, 1-38면(1993). 그리고 최대권, 韓國憲法の 座標: “‘領土條項’과 ‘平和的 統一條項,’” 事例中心 憲法學, 증보판, (서울: 박영사, 2001), 557-579면 참조.

13) 위에서 인용한 최대권,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특히 49-61면; 최대권, “民族主義와 憲法,” 위 憲法學: 法社會學的 接近, 106-143면 등 참조.

Founding Fathers)에게는 예외 없이 친일파의 테두리를 씌우고 있습니다(framing). 이승만 및 박정희 두 대통령에게 씌운 친일파 테두리는 대표적 예죠. 백선엽 장군도 그 예의 하나죠. 대한민국에는 진정으로 건국의 아버지 즉 the Founding Fathers가 없는 것일까요? 이 현상의 이유 내지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이념, 사상 내지 가치를 좌·우로 분류할 때, 안정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좌의 spectrum이 우리나라에서는 예컨대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서 지나치게 너무 넓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 등 앞서고 오래된, 세계를 이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좌라고 하면 자기 나라가 발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정책을 놓고 좌우를 분류하지, 자기 나라의 기본 내지 정통성(입헌군주제, 건국의 아버지가 세운 의회주의·입헌주의·자유민주주의체제)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은 반역적이라 보고 좌에 포함시키지 않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로 보는 입장이 어떻게 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자유가 없는 공산사회주의적 전체주의 북한과 자유민주주의 남한과의 체제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형편에서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부인한다면 북의 체제를 따르겠다는 것입니까?

다음으로 ② 좌파들로 하여금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쉽사리 친일파의 테두리를 씌울 수 있게 만든 그 근본(그 원인제공자)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 근본은 단연 조선을 통치했던 일제의 우민정책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다수의 하급인 9급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도 필요하지만 상급인 과장급, 국장급, 장관급 공무원, 군대로 치면 다수의 사병이나 하사관도 필요하지만 상급인 영관급, 장군급 군인도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일제는 기껏해야 하급 실무자급 조선인을 뽑아 썼지 독립한 국가 운영에 필요할 고급인재를 채용해 의도적으로 교육·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조선청년들을 노무자나 잡부로 혹은 사병이나 군속으로 강제로 징용해서 부려먹었지, 고급인재를 양성치 않았음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건국 후 이승만 박사는 자주 “인재가 없다”고 한탄하셨다고 들었습니다.¹⁴⁾ 그 이유를 알만하지 않습니까? 오래 전에 읽은 서민호 의원의 글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어학회사건으로 수감됐을 때 형무소 한국인 간수였던 사람이 1950년대 살인혐의에 연루되어 수감됐을 때 보니 교도소 소장이 되어있더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일제 행정기구나 군대조직의 하급 관리직이나 하사관이나 초급간부급의 경험자이면 이들을 채용해서 그것도 상위직급의 자리에 앉혀 그 노하우를 활용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애국지사 색출에 유능했던 그 유명한 일제 고등계 형사였던 노덕술이 해방 후 공산간첩 잡는데도 유능함을 보인 경찰간부가 되고 나중에는 헌병수사대장이 되었습니다. 악명 높았던 그를 꼭 언급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

14) 위 이주영, **대한민국의 건국과정**, 145-146면 참조.

다. 다만, 그 이외의 일제 행정기구나 군대의 하위직급 경험자들은 실은 건국에 따라 당장 급했던 각 분야의 교육받은 유경험자 인재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던 유일한 인재 풀이었으니, 건국 후의 산적한 국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닌 재능과 훈련과 경험을 그것도 중히 활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일제의 탄압과 우민정책의 전개 속에서도 지식인 사이에는 우리도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여러 형태의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3·1운동에 이어 1920년대에 민족지도자들에 의한 민립대학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이를 허락지 않으면서(그래서 연세대, 고대 등은 겨우 연희전문, 보성전문 등으로만 허가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학년 200여 명의 오직 의학부·법문학부로 구성된 경성제국대학¹⁵⁾을 설립하기에 이릅니다(조선인 출신은 대략 그 10~30%를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정치·경제이론이나 과학과 고등기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려고 정치학부·경제학부나 이공학부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무렵이 되어서야 전쟁 때문에 이공학부를 키워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면서(그러니까 패망 불과 몇 년 전에야) 겨우 이공학부를 두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해방 전 남한은 주로 농업 및 경공업 지역이었는데 해방이 되자 남한에는 과학자(scientist 및 engineer)는 물론 훈련받은 기술자도 별로 없었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한국인 과학자로 해방 전에 이공계 박사학위를 받은 이는 단 두 분뿐이었는데, 이태규 박사는 6·25전에 이미 미국으로 이주해 Utah대학 화학과 교수가 되었고, 이승기 박사는 월북해 석탄에서 인조섬유(비날론)를 뽑아내는 기술로 공로상을 받는 등 북한에서 유명했습니다. 해방 전 일제 치하에 지주집안으로 재정능력이 있어 일본으로 유학 보낼 수 있던 집안 출신 자식이 아닌, 가난했지만 똑똑했던 조선 청년들이 쉽사리 고급 지식을 터득해 자기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었던 진로가 무엇이였을까요? 아마도 겨우 당시의 사범학교나 일본의 여러 군관학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범학교를 나와 일제의 (식민지교육을 담당하는)교사가 되거나 군관학교를 나와 일제하의 초급장교가 된 조선청년들이 친일파였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들을 건국 후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상급 공직자 및 국군의 상급 장교로 발탁해서 유용하게 쓰인 행위도 친일이 되는 것일까요?

3

대한민국을 건물로 치면 대한민국 헌법은 그 설계도입니다. 빌딩이나 거대 건축물 등 설계도를 보면 그 건물의 목적이나 미래의 용도나 그 건물에 관한 모든 것의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그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

15) 정선이, **경성제국대학 연구**, (서울: 문음사, 2002); 정종현, **제국대학의 조센징**, (서울: 휴머니스트, 2019) 등 참조.

가치, 이상 등을 모두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대로 조직·구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헌법을 곧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정치라면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목표, 가치, 이상을 어떻게 실현해나가느냐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니, 그리고 특하면 헌법을 바꾸자고 권력취득에 유리한 권력구조변경에 초점을 맞춘 개헌론을 버젓이 정치라며 전개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기념비적 건물을 놓고 허물어야 한다거나 이리저리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야 그 건물이 원형은 물론 안전마저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그 전문에서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세계를 리드하는 선진국의 목표, 가치, 이상을 설정·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세계를 리드하는 영·독·불·일본·미국에서 자기 나라를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 “건국의 아버지”들을 자기 나라에서 타기하는 인물(즉 친일파) 등으로 우리처럼 매도하는 타령들을 권력 취득을 위한 좌파정치라는 이름으로 전개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탈레반이 나라를 결판내는 아프카니스탄같은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자유 대한민국은 건국의 아버지들의 공로로 1948년 8월 15일 건국되어 그 후 맞이한 온갖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고 오늘날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의 대열에 섰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유한 문자를 가진, BTS 등 여러 문화영역에 걸쳐 문화국가로서의 세계적 위상도 뽐내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목표, 가치, 이상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걸쳐 자유세계를 리드하며 국제평화의 유지에 앞장서 노력하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의 위상을 이루어내자는 다짐을 건국 경축행사의 내용으로 다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남북통일의 성취를 이룬 다짐의 핵심 내용의 하나로서 다짐합니다(헌법 제4조). 대한민국 헌법 하의 남북통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자유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한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헌법 제3조).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30일

최 대 권

참고문헌

- 강규형·김용삼·남정옥·정경희, **대한민국 건국 이야기 1948**, (서울: 가파랑, 2019).
- 강진용, **주체의 나라 북한**, (오월의봄, 2018).
- 박병엽 구술, 유용규·정창현 엮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 전 노동당 고위간부가 겪은 비화, (서울: 선인출판사, 2010).
- 전병무, **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 (서울: 역사공간, 2012).
- 정선이, **경성제국대학 연구**, (서울: 문음사, 2002).
- 정종현, **제국대학의 조센징**, (서울: 휴머니스트, 2019).
- 최대권, “김대법원장이 ‘법의 지배’ 무너뜨린다,” **문화일보** 2021.2.5.일자 포럼.
- _____, “김원봉 추앙은 ‘대한민국 가치’ 배신,” **문화일보** 2019.6.11.일자 포럼.
- _____, “근현대사는 역사학자 전유물 아니다,” **문화일보** 2015.11.11.일자 포럼.
- _____, “「南北合意書」와 관련된 제반 法問題 - 특히 「特殊關係」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제34권 3·4호, 1-38면(1993).
- _____, “대한민국의 정체성(正體性)은 무엇인가,” **국가전략연구 Global Affairs**, 세종대학교 세종연구원, 2011년 가을호(국가정체성 위기 특집호), 38-58면.
- _____,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본질과 현상**, 2019년 겨울 58호.
- _____, “民族主義와 憲法,” **憲法學: 法社會學的 接近**, 106-143면.
- _____,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_____, “聯邦制度,” **憲法學: 法社會學的 接近**, (서울: 박영사, 1989), 373-418면.
- _____, “정부 존재 이유 저버린 文정권 4년,” **문화일보** 2021.4.7.일자 포럼.
- _____, “韓國憲法の 座標: ‘領土條項’과 ‘平和的 統一條項,’” **事例中心 憲法學**, 증보판, (서울: 박영사, 2001), 557-579면 참조.
- Tom Bingham, *The Rule of Law*, (Penguin Books, 2010).
- Tom Ginsburg and Tamir Moustafa, eds. *Rule by Law: Politics of Courts in Authoritarian Regi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Franz Neumann, *The Rule of Law: Political Theory and the Legal System in Modern Society*, (Leamington Spa: Heidelberg: Dover, NH: Berg Publishers, 1986) 등 참조.
- Matthew Kroenig, *The Return of Great Power Rivalry: Democracy versus Autocracy from the Ancient World to the U.S. and Chin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 Deidre Nansen McCloskey, *Why Liberalism Works: How True Liberal Values Produce a Freer, More Equal, Prosperous World for All*,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9).
-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2 vol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 Brian Z. Tamanaha, *On the Rule of Law: History, Politics,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